



신규 선임 감사(위원)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? (상)

2024.03.28

신규 선임 감사위원,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사항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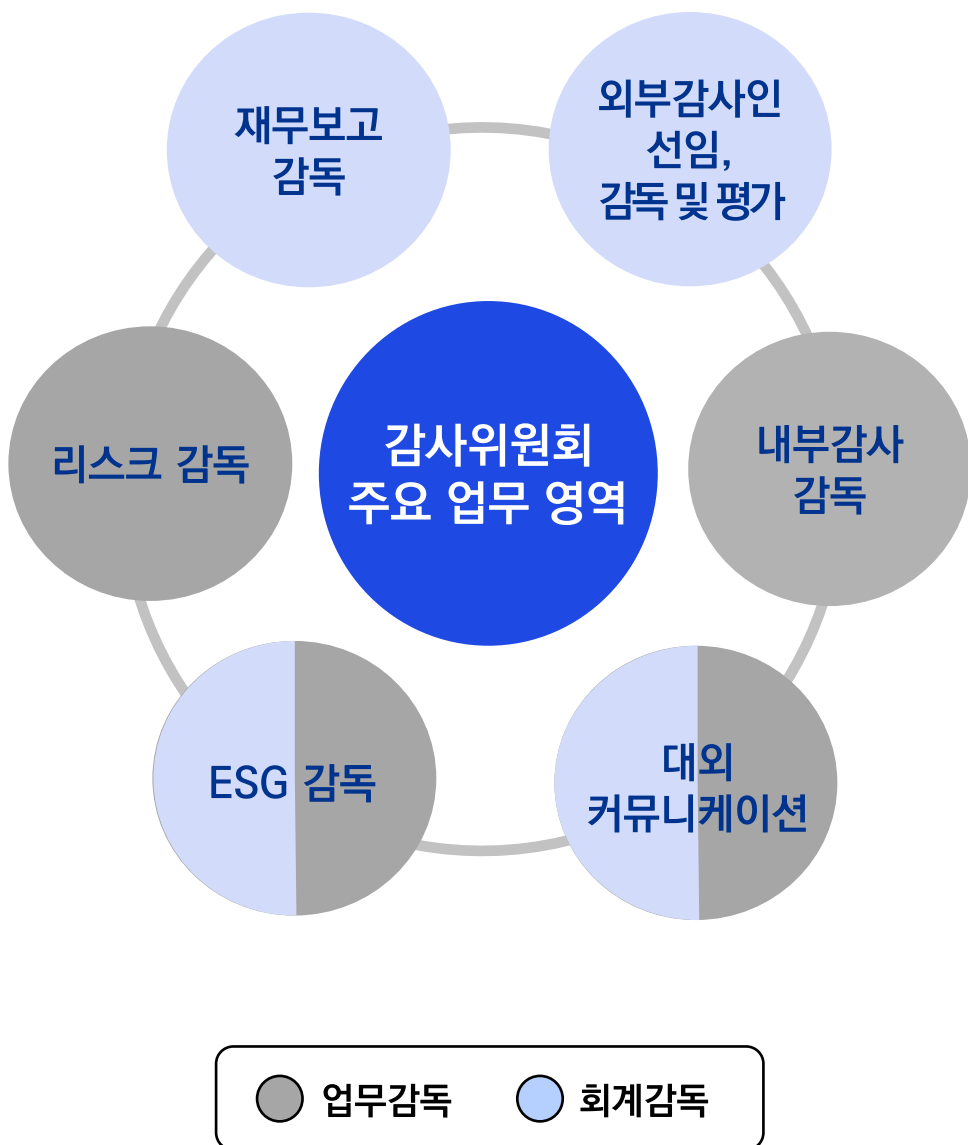
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,
관련 규정과 지원조직 현황, 연간 활동계획 파악 필요



- 1 감사위원회 업무영역과 관련 법규 및 규정
- 2 감사위원회 주요 법적 권한과 역할
- 3 감사위원회 규정 검토
- 4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점검
- 5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점검
- 6 감사위원회 연간 활동계획

감사위원회 업무영역과 관련 법규 및 규정

감사위원회의 주요 업무영역과 적용되는 법규 및 규정에 대한 파악 필요



관련 주요 법규

경성규범

- 상법
-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
-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/가이드라인」
- 「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」

연성규범

- 「감사위원회 모범규준」
- 「ESG 모범규준」 中 「지배구조 모범규준」
- 「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」
- 「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」

감사위원회 주요 법적 권한과 역할(1)

상법

法
제412조

이사의 직무집행감사와 주요 보고 요구 및 조사권한

-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,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
-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(필요시 전문가 지원 요청 가능)

法
제412조의5

자회사의 조사권

-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
-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

法
제402조

유지청구권 (留止請求權)

-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

法
제447조의4

감사보고서

-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받은 감사는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

감사위원회 주요 법적 권한과 역할(2)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시행령
제9조

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독 및 평가

-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대면보고 수령
-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이사회에 대면보고
- 내부회계관리규정 제·개정 승인

法
제10조

외부감사인의 선정

-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정
- 그 외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감사 등이 외부감사인을 선정

法
제22조

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보고

-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필요 시,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고 이를 평가
-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,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
-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,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발견 시 외부감사인에게 통보

감사위원회 규정 검토



감사위원회 규정

- 감사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(사외이사 비중, 위원장 자격 등)
- 권한, 역할, 책임 등 감사위원회에 위임된 사항
- 감사위원회 활동을 내실 있게 보장할 근거와 범위
- 최근 법 제도 변화사항의 반영
- 회의소집 절차, 관계자 의견 청취, 감사록 작성 등 실무적인 지침도 포함



사업보고서 상 감사위원회 공시사항 검토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감사위원 인적사항과 전문성과 독립성 |
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과거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내역 (회의 일자, 안건 명, 참석률, 가결여부 등) |
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감사위원회 교육 계획 및 실시내역 확인 |
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|



제11회

Advanced Auditor Program

신임 감사위원과 감사를 위한

『감사위원회 핸드북』 교육 프로그램

- 일시: 2024년 5월 21일(화) 09:50 ~ 15:10 (오찬 제공)
- 장소: 삼성KPMG (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)
- 참가 문의: 민경석 책임연구원 (kyeongseokmin@kr.kpmg.com | 02-2112-4292)